

(주)신태양 불공정거래 및 부정비리 제보 가이드라인

1. 제보유형

① 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란 협력업체 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특혜/불이익을 주거나, 법 을 위반하는 행위, 협력업체 또는 경쟁업체와 거래가격을 담합하는 불법행위로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약칭 : 공정거래법)제40조, 제45조, 제46조의 행위를 말합 니다.

② 부정비리

부정비리 행위란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.

- 금품/향응 수수
- 자산 횡령/유용
- 공금 횡령/유용
- 부당한 업무처리
- 성희롱/괴롭힘
- 문서/계수 조작

2. 제보방법 불공정거래 및 부정비리 제보는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신 후 다음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보하시면 됩니다.

① 불공정거래행위 : s986575@gmail.com

② 부정비리 : s986575@gmail.com

3. 제보자 보호기준

① 정당한 제보를 한 제보자는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.

②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 됩니다.

③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과정에서 진술,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분에 대하여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됩니다.